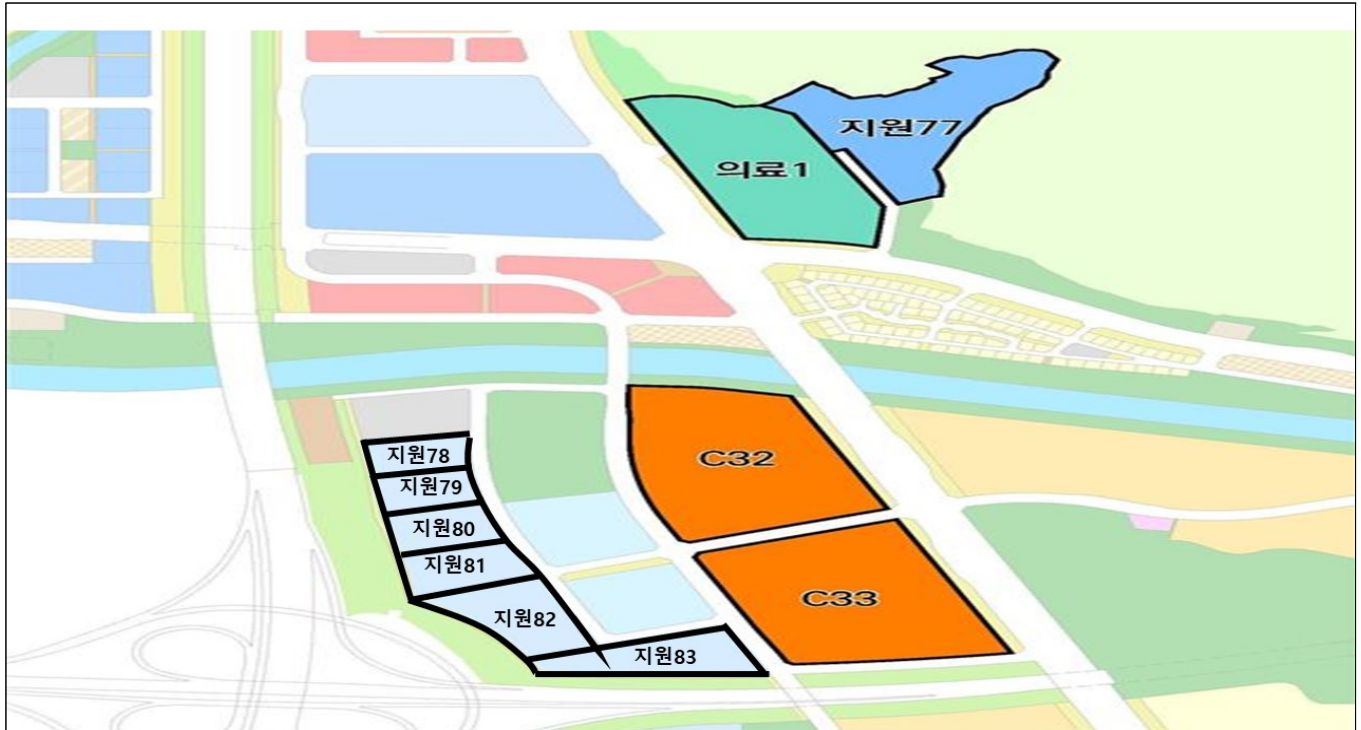


□ 의료시설용지 인근 도시지원시설 현황



□ 각 지원시설 용지별 면적

| 구분 | 지원77 | 지원78 | 지원79 | 지원80 | 지원81 | 지원82 | 지원83 |
|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면적 | 36,309㎡ | 7,246㎡ | 7,512㎡ | 8,282㎡ | 9,629㎡ | 14,131㎡ | 14,651㎡ |

※지원77용지의 경우 복합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야 하며, 그 외 용지는 市 추천권으로 내부 심의를 거쳐 추천 可

□ 지원시설 허용 용도 (지구단위계획)

| 구 분 | | 도시지원시설용지 |
|-----------|------|--|
| 건축물 용도 | 도면표시 | I4(지식산업형) |
| | 허용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회의장, 전시장* 교육연구시설(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 제외) 노유자시설(노인복지시설 제외) 운동시설(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/ 방충통신시설 / 자동차관련시설(폐차장 제외) |
| | 불허용도 | 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 건폐율(%) | | 60% 이하 |
| 기준용적률(%) | | 300% 이하 |
| 허용용적률(%) | | 360% 이하 |
| 최고층수 | | 20층 / 제한없음 (지침도에 따름) |
| 해당 블록(획지) | | 78 ~ 83 |

주1)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. 단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은 불허

주2) 문화 및 집회시설은 부수용도로써 건축물 연면적의 30% 이하에 한함